

유치원 규칙 개정(안)

안전	
번호	

제출연월일 : 2024년 9월 11일

제 출 자 :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담 당 자 : 교사 이예지

1. 제안이유

기 수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규칙을 최근 개정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4조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3. 주요내용

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적 처리 용어

나. 기타 수정사항 (토요휴업일, 교외체험학습 등)

- 붙임 1. 유치원 규칙 신규대조표 1부.
2. 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 끝.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장 총칙	제3조(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32-8에 둔다.	제3조(위치)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32-8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6조 (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3. 학년말 방학 4. 개교기념일 5. 기타휴일 교육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재량 휴업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5항의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군산용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 4. 개교기념일 5. 토요일휴업일 6. 유치원장 재량휴업일 (당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실시) 7. 기타 임시 휴업일 (유치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이 날을 수업일수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8조(정원) 본원의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로 한다.	제8조(정원) 본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제10조(수업일수 등)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2.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 체험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은 교외체험 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3.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 및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우(경연대회 참가, 개별위탁체험학습, 효도·방문학습 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한 후 실시한다.	제10조(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각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업일수의 10분의 1 나.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 기간 2.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가. 유아의 다양한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	

		<p>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p> <p>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p>	
	<p>제11조(수업시간) 본원의 수업시간은 매일 4~5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요구와 제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p>	<p>제11조(수업운영방법)</p> <p>1. 수업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가. 교육과정: 08:30 ~ 13:00 로 한다.</p> <p>나. 방과후 과정: 13:00 ~ 17:00 로 한다.</p> <p>2.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 운영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p>	<p>제16조(편입학) 타 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편입을 허가한다.</p>	<p>제16조(편입학/전입학) 본원 유아 정원 기준을 고려하여 허가한다.</p>	
<p>제6장 기타 비용 징수</p>	<p>제22조(기타의 비용)</p> <p>1. 본원의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단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2조(기타의 비용)</p> <p>1.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그 밖의 수익자 부담금 비용경비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p>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제정 2003. 3. 1
1차 개정 2009. 3. 6
2차 개정 2014. 3. 1
3차 개정 2020.10.
4차 개정 2024.1.
5차 개정 2024.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 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32-8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교육연한) 본원의 교육 연한은 1~3년으로 한다.[개정 2020.10.20]

단 취학 유예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년 2학기로 나누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2.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

4. 개교기념일

5. 토요일휴업일

6. 유치원장 재량휴업일 (당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실시)

7. 기타 임시 휴업일 (유치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이 날을 수업일수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원은 만3,4,5세 혼합연령반 1학급으로 편제한다.(개정 2024. 1.)

제8조(정원) 본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제9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누리과정 범위안에서 유치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교육한다.

제10조 (수업일수 등)

1.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각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업일수의 10분의 1
 - 나.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 기간
2.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 가. 유아의 다양한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수업시간)

1. 수업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가. 교육과정: 08:30 ~ 13:00 로 한다.
 - 나. 방과후 과정: 13:00 ~ 17:00 로 한다.
2.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 운영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단,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유예자는 증빙자료 첨부 시 입학할 수 있다)

제13조(입학 시기)

3월 초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학급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14조(입학 결정)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처음학교로’ 온라인 접수 후 전산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단 만 3세·4세 유아 중 차년도 재취원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에서 추첨없이 취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본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여 다음연도에 재입학을 할 때는 재입학 희망서를 제출한 경우 추첨 없이 입학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전입학) 본원 유아 정원 기준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제17조(전출) 본원에 재학 중이던 원아가 주소 이전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허가한다.

제18조(휴학)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학년도 말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을 한 유아는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할 수 있다.

제19조(퇴학명령)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 자

제20조(수료)

원장은 만3·4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와 취학유예자, 전입학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단 전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근거 자료는 전기관의 출석부 사본으로 한다.)

제21조(졸업)

원장은 만 5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전입학자 포함)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단 취학유예자는 제외하며, 전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근거 자료는 전기관의 출석부 사본으로 한다.)

제6장 기타 비용 징수

제22조(기타의 비용)

1.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그 밖의 수익자 부담금 비용경비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7장 규칙 제(개)정

제23조(규칙 제(개)정)

1. 유치원 규칙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다.
2.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교직원 협의 후 군산용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8장 유치원 생활 기록

제2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장 시상

제25조(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0장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제26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④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⑦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⑧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⑨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⑩ 그 밖에 유치원(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21조(훈육)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③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거나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

부 칙

1. 이 규칙은 2024년 9월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